#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7

발의연월일: 2024. 7. 8.

발 의 자: 박홍근・이기헌・이수진

김영호 • 박상혁 • 정을호

정준호・진성준・문금주

조정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6.9%에 달하는 가운데 한부모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 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 요가 있음.

그러나 이른바 '인천라면 형제' 사건에서도 보여지듯 그동안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으 로 등한시되어 왔고 2021년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가정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(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,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)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

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회수율도 높이고자 함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제1조).
- 나.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(안 제5조제1항).
- 다.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양육비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.
- 라. 정부의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3항).

- 마. 양육비의 대지급이 이뤄지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 중복 지원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.
- 바.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 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 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).

###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 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양육비"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(이하 "미성 년 자녀"라 한다)를 보호·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
- 2. "양육비 채무"란 「민법」 제836조의2 및 「가사소송법」상의 집 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.
- 3. "양육부·모"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.
- 4. "비양육부·모"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.
- 5. "양육비 채권자"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 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 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- 6. "양육비 채무자"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(비양육부·모의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·모의 부모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제3조(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)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양육부·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4조(양육비의 지급 의무) 비양육부·모는 양육부·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 히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양육부·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·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5조(양육비 대지급 신청) ①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「가사소송법」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(이하 "이행관리원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급(이하 "양육비 대지급"이라 한다)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「민법」 상 성년에 이를

때까지 할 수 있다.

- ③ 양육비 대지급 신청의 대상, 금액,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제7조에 따른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 제6조(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징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한다.
  - ②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-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해당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7조(양육비결정위원회)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
  - 2.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5분의 1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
  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조직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양육비 대지급 결정 및 통지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양육비 대지급 결정의 요지, 양육비 대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양육비 대지급 실시 및 이의신청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·통지된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.
  -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대지급 결정·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권자가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

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대지급 실시와 동시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.

- ③ 제8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10조(양육비 대지급의 중지 등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등 양육비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③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

대지급 재개의 기준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11조(비용환수)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반환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,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 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의 반환 기간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권리의 보호) ① 양육비 대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.
  - ② 양육비로 지급받은 양육비 대지급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.
- 제13조(벌칙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대 지급